



タイトル Title	한국의 고등교육 점진적 무상화 관련 법제정비 현황 및 특징(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egislation on Gradual Free Education in Korea)
著者 Author(s)	고, 전
掲載誌・巻号・ページ Citation	高等教育における経済的負担軽減及び修学支援に係る法・制度・行財政の日韓比較研究.:
刊行日 Issue date	
資源タイプ Resource Type	Research Paper / 研究報告書
版区分 Resource Version	author
権利 Rights	
DOI	
JaLDOI	
URL	http://www.lib.kobe-u.ac.jp/handle_kernel/81012476

한국의 고등교육 점진적 무상화 관련 법제정비 현황 및 특징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egislation on Gradual Free Education in Korea

고 전 (제주대학교 교수) 1)

I. 개관 : 한국의 무상교육

1. 대학 무상교육 및 COVID-19 상황에서 학자금 지원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 지방국립공립대학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제출-국가 또는 지자체의 등록금 부담

- 국립공주대학교 주관(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등 5명 공동 주최)으로 2020년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되었다. 주요 취지는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무상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어 정부여당 국회의원 10인은 2020년 8월 18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그동안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으로서 지방대학의 무상교육을 제안한다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통칭 등록금)은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과될지 주목이 되는 시점이다.

- 국립대학 무상교육 운동은 2019년 3월부터 부산대 교수회가 ‘지방 국립대학 무상교육을 위한 100만 전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현재까지 1만여 명의 교수 및 학생 서명)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체인 국교련 역시 국립대학 무상교육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 COVID-19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운동 전개

-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운동은 2020년 5월부터 일기 시작하여 7월 1일에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결성했다. 학생들은 코로나 사태로 부실해진 대학교육은 부실하여 ‘부당이득’ ‘불완전이행’ ‘학습권 침해’이므로 등록금이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상태이며 일부대학에서는 장학금(30만원 전후)의 형태로 2학기 등록금에서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예산 2718억원을 요구했다(국회 1000억원으로 삭감).

■ COVID-19 정국하에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대책 발표

- 이보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4월 26일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상환을 유예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385억원 대출로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2019년 2.2%→2020년 1학기 2.0%→2020년 2학기 1.85%, 연간 이자 부담 174억원 경감

- 실직·폐업 시 국가장학금 II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1) 고전, 高鰲, Ko, Jeon/ 교육법/ 제주대학교 교수,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제1회 교육법학회 학술상 수상, 현 제주대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일본교육개혁론(2014), 일본교육법학(2019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 2009년 이전 대출자의 금리를 최고 7.8%에서 2.9%로 전환 대출
-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대폭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2. 한국의 무상교육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 : 현행법상 고등교육은 선택 유상교육

■ 무상교육 범위에 관한 통설 : 무상교육 법정설(교과서 대금, 수업료 면제)

- 다수설 : 국가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무상범위 법정설
- 소수설 : 취학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무상으로 하는 수학기 무상설(修學費無償說), 교육제공에 대한 대가인 수업료만을 무상으로 하는 수업료무상설(授業料無償說) 등
- 한국 헌법재판소 ‘필수 무상비용’(수업료, 입학금, 학교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 무상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12④, §60의4, 초중등교육법시행령§104의2)에 규정되어 있다
 - 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하여서는 안된다(무상 의미)(초중등교육법 §12④)
 - ② 특정 조건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가정 정보통신 학습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 ※ 특정 조건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저소득자 등을 의미
 -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무상교육화 이후 징수한 것에 대해 위헌판결(2012.8.23)
- 한국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무상교육은 수업료 면제에 불과하여 큰 느낌으로 와닿지 않는다. 한국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수업료 등 공교육비보다 훨씬 많아 체감하기 어렵다.
- 최근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21년에 완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주요 무상교육 법적 근거 : 헌법 및 교육기본법

- 헌법 제3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 가정과 국가는 능력개발, 개성신장,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다
- 보호자에게는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면 국가에게는 ‘무상 의무교육제도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 부모의 책임은 일본의 교육기본법 제10조(가정교육)에서 말하는 제1의적 책임과 같은 의미다
-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이다라고 했으나 의무교육 아닌 영역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은 소학교와 중학교(9년), 의무교육 아닌 무상교육은 취학전, 고교, 특수교육 등
 - 1948년 제정 헌법은 초등무상교육만을 보장했으나 1972개정에서 초등교육에 법정교육 추가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읍·면·도서·벽지 지역부터 1983년 시작되어 2004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 장애인을 위한 의무교육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특수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특수학교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③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특수교육법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보조할 수 있다.

■ 무상교육의 단계적·순차적 실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영향: 합리적 차별로 합헌

- 1984년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개정시, 순차적 실시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
- 1985년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85.3.1.) 도서·벽지지역에서 우선 실시
- 실시 시기와 방법만을 위임한 것으로 합리적이며 포괄위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1997년에도 교육기본법(1997)에서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순차적 실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읍·면지역,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등
- 헌법재판후 대통령령 위임 부분에 대하여는 삭제하여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다(2005.3.24.).

3.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의 실시 : 영유아 교육

-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유아학비를 무상지원(국공립 입학금 수업료 면제, 사립유치원 지원)한다.
- 어린이집은 3-5세 아동에 대하여 무상으로 월 보육비(25萬圓=25,000円)를 지불한다.
- 의무교육 외의 무상교육비 부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분쟁이 제기되었다.
-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관련 규정상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이 원칙이다.
-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만3세 이상 유아로 3년간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영유아는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유아보다 범위가 넓음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무상보육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교육실시 : 2021년 완성

-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바 있고,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교육부 고시(2020.3.3.)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도 및 시·군·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 금액 등) ①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표 1> 한국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출하는 재원 부담 비율

시·도	부담 비율	시·도	부담 비율
서울특별시	4.5%	강원도	9.5%
부산광역시	4.5%	충청북도	6.9%
대구광역시	3.9%	충청남도	8.4%
인천광역시	3.6%	전라북도	9.9%
광주광역시	3.8%	전라남도	13.2%
대전광역시	3.1%	경상북도	10.3%
울산광역시	3.4%	경상남도	5.7%
세종특별자치시	3.0%	제주특별자치도	12.0%
경기도	2.9%		

비고 :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이란 시·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급여·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던 금액(2017년결산기준)의 비율을 말함.

③ 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필요한 시·도와 시·군·구 간 분담 규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교육감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늦어도 전년도 9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II.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한계

1. 각 법률에 있어서 교육재정의 언급

■ 고등교육 재정의 법적 근거 미흡²⁾

- 고등교육 재정은 상당한 재정 규모에 비하여 지원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 정부가 의뢰한 「고등교육 재정 종합진단 및 대책 연구팀」 보고서(2020.6)에 따르면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정지원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큼.

<표 2>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한계

법조항		내용	한계
교육 기본법	제7조 (교육재정)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의무조항이기 보다는 권장성 임의조항의 성격이 강함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립 학교법	제43조 (지원)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의무조항이기 보다는 권장성 임의조항의 성격이 강함
고등 교육법	제7조 (교육재정)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주기적 계획수립 및 추진이 직접적인 재정확보를 보장하지 않음 ◦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1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재정 확보와 관련성 미흡 ◦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재정 확보와는 관련성이 미흡
	제7조 (교육재정) 3항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재정) 4항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서영인 외(2020), 교육재정 종합진단 및 대책, pp.141-142

2. 학자금 중심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정책 완성으로 교육 기회 확대³⁾

-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가장학금 정책을 도입하여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제도는 2013년에는 정부 지원으로 43%에서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정책의 완성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 대학생·학부모의 부담 완화 노력으로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 자체 지원(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제도가 완성되었다. 정부 차원의 국가장학금 확대 시행 등으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장학금의 소득별 차등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도 고등교육의 접근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국립대학의 경우 명목 등록금(경상비)은 2011년 대비 2018년에 3.9%인하되었다. 실질등록금(불변가) 수준은 12.9% 인하되었고, 사립대학의 명목등록금은 3.0%, 실질은 12.0%인하되었다.

■ 정부 예산중 고등교육 예산 비중의 특징적인 변화⁴⁾

-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10년 전에 비하여 다소 감소했다.(2008년 19.6%→2018년 18.2% / 고등교육 비중은 4.0%→2.6%로 감소)
- 고등교육 예산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주로 학자금 지원사업이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10년 전에는 학자금 지원사업이 고등교육 예산중 6%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 46.3%로 대세).
-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GDP대비 고등교육예산, 정부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모두 감소했고, 국가장학금 확대이후 국·공립대 경상비(기관지원)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대학 재정여건 악화). 경상비를 제외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중 국가장학금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요 및 특징

- 국가장학금 시행에 따라 1인당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감면율)이 국·공립대학은 2012년에, 사립대학은 2016년에 약 5%이상 감면율을 달성하였다.⁵⁾ 학자금 대출은 2013년에 국가장학금과 유사한 규모였고, 2014년 이후 학자금 대출규모는 감소세이다. 국가장학금 규모는 2017년 4조 3,346억원으로 7년 전보다 5.7배 증액되었고, 계속 증가중이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약칭: 학자금상환법, 2010.1.22. 제정 시행)

-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서영인 외(2020), 교육재정 종합진단 및 대책, p.139

4) 정부보고자료(2019.10.4.) 고등교육재정 운영 현황 및 확보방안 협의(안), 위의 연구팀 작성 pp.5-11.

5) 정부보고자료(2019.10.4.) 고등교육재정 운영 현황 및 확보방안 협의(안), 위의 연구팀 작성, p.17

- 제9조(자격 요건) ①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으로 하고,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 제11조(대출 금리)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 2020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교육부 고시

- 자격요건은 신입생의 경우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자이다.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연령은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45세이하)이다. 대출한도는 등록금은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까지이다.

<표 3> 2020학년도 2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교육부 고시 2020.7.9.)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대학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
	재학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년 미만시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연령제한	공통	- 만 35세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이하)
신용제한	공통	- 개인 신용평점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신청가능대학	공통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대출한도	공통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기타	공통	- 기초, 차상위, 다자녀(3인이상) 가구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도 이용 가능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업 후 상환 대출 또는 일반상환 대출 선택 가능

III. 최근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한 입법 논의

1.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논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특별법 제안⁶⁾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안

- 정부 의뢰로 수행된 ‘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보고서(2020.6)에 따르면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안한 바 있다. 법률의 제정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 체제 개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재정 확충 근거는 OECD 국가 평균(GDP의 1.1%)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추가 재원 규모를 추정했다. 이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2016-2020)에서 3개의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 처분된 바 있다.

■ 고등교육법 개정 제안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고등교육재정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고등교육 재원의 비율을 OECD 국가 평균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현행)	고등교육법 제7조 제7항(신설)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없음	③ 좌동 ⑦(신설) 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에는 국가 재정 중 고등교육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교육예산의 확보 및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안

- 정부 부담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하여 한시법으로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안하기도 한다. 방법은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과거에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2016.12)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다.

2. 지방 국립공립대학 지원법안 : 국회 제출(2020.8.18)

- 박원주 국회의원등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했는데, 개정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진술 한 바 있다.

“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와 함께 지방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 정부에서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16조의2 신설).”

6) 정부보고자료(2019.10.4.) 고등교육재정 운영 현황 및 확보방안 협의(안), 위의 연구팀 작성, p.27

지방대학 육성법 제16조(현행)	지방대학 육성법 제16조의2(신설)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좌동 제16조의 2(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등록금”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주의 :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대학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에 따라 국공립 지방대학에 대한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2년 5,486억원, 2026년 5,036억원 등 5년 동안 총 2조 6,294억원(연평균 5,259억원)으로 추계되었다.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22-2026(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국공립 지방대학 등록금 지원 (안 제16조의2)	548,628	537,009	525,635	514,501	503,603	2,629,376	525,8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 국공립 대학 56개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 11개, 지방소재 45개

구분	대학교	
서울, 인천, 경기 (11)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육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인천대, 경인교육대, 한국복지대, 한경대	
지방 (45)	강원(4)	강원도립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춘천교육대
	충청 (12)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공주교육대, 공주대, 청주교육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전통문화대, 한밭대, 한국과학기술원
	전라 (11)	전남도립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육대, 군산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육대, 한국농수산대
	경상 (17)	경북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상대, 경북대, 금오공과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교육대, 부경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안동대, 진주교육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제주(1)	제주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

◇ 제정이유(2014.1.28.제정, 2014.7.29. 시행)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지방화시대에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지방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한 경쟁구도와 대학 간 수직적 서열구조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로 지역산업이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져 지역인재가 다시 유출되는 악순환을 막고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3조).
-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제5조).
-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함(제12조).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13조).
-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학교 출신자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5조).
-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함(제20조).

3. 교육부의 COVID-19관련 대학생을 위한 지원 대책(2020.4.27.)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 실직자와 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우선하여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하여는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 첫째, 2020년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하여 이자부담을 줄인다. 취업후 상환 조건인 대출(변동금리)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1.85% 금리 적용하고, 일반상환 조건인 대출(고정금리)의 경우 2020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는 1.85% 금리를 적용한다.
- 둘째,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II유형 등을 우선하여 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즉,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II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 수준)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 1·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9·10구간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셋째,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4월 27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금리는 2.9%만 부담하고 대출기간 10년 연장).
- 넷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위해서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개선하였다.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최대 6.1%p~9%p감면) 한다.
- 또한, 5월 중순에는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며, 참고로, 2019년 1학기에 약 88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7,600억 원의 국가장학금(I 유형·다자녀)을 지원하였다.
 -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등교육재정위원회」 (2020.4.20.출범)

사립대학 재정난 해소 논의를 위한 정부 사립대협의체이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4월 20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으로서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위원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외부 교수진 등이 참여한다. 과거 교육부에 설치된 사학발전위원회의 후속이라 할 수 있고,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학과 정부간 협의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대학 재정 상황 △고등교육예산 확충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 △3주기 구조개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교육부차관이 교육부 내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할 수 있다고 하여 제안된 것이다.

앞서 교육부와 사립대 총장들은 ‘사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함께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발족한 뒤 첫 회의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표 5>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상환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 만 35세 이하 (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 금리	· 변동금리(연 2.0%)	· 고정금리(연 2.0%)
-------	----------------	----------------

대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 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 원 · 생활비 :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

대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

IV. 한국의 고등교육 부담경감 및 무상 법제의 특징 및 평가

1. 부모 의존형 대학 등록금 중심의 고등교육 비용

- 최근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부모가 대학 교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오랜 관습이고, 낮은 취업률로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도 어렵다.
- 대학등록금은 국립 및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대학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86%이고, 미국은 32%, 호주가 8%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등록금 수준은 사실상 세계 1-2위라 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의 50% 전후의 수준이다.
- 특히, 한국의 경우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규모가 공교육 시장을 능가하여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대학등록금 이외에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비 및 과외 교습비 부담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2021년 완전실시 예정)이 도입되어도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2년제 전문대학포함)은 2008년 83.3%를 정점으로 매년 다소 하향 추세이고, 지원자 대비 대학정원이 초과된 2019년 대학입시부터는 70% 전후이나 여전히 고등교육 대중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만큼 국민들의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은 국가이다.
- 교육부의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7.6%로 전년 대비 0.8%p 하락하고 있다. 일반대학은 98.9%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으나, 전문대학은 전년 대비 3.6%p 하락하였고, 대학원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한 변화를 보였다.

2. 학생 체감형 고등교육비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정책의 추진

-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9년 국민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 분야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제1순위 정책은 '등록금 부담 경감'에 33.0%가 응답할 정도로 큰 부담이라 할 수 있다.
- 2011년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운동의 결과,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제한)를 실시하고 있다.
-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1유형(부모의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지원-정부장학금)과 2유형(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대학장학금)이 있다. 그 결과 전체 학생중 31.5% 학생에게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나 학생들은 COVID-19 비대면 수업상황을 맞이하여 대학 측에 25% 등록금 반환 소승을 제기하였고, 정부 역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무상교육 법안을 준비 중이다.
- 또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지원되는 국민세금은 대학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3. 국가 장학금 의존형 고등교육비 지원 정책

-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예산 중 국가장학금 비중은 46.3%(2017)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크다. 201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에 지원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머문다. 고등교육비에 대한 '정부 : 민간' 지출 비율면에서 OECD 평균은 66 : 32인 반면 한국은 38 : 62로 반대이다.
- 따라서 연구보고서들은 정부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내국

세의 일정비율을 대학에 교부할 것을 제안한다.

- 국가장학금은 2018년 기준으로 69.6%가 신청하지만, 소득 및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2.6% 만이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아직은 혜택이 제한된 것이 한계이다.
- 소득 8분위 이하와 학점은 C학점 이상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점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담이다. 사립대학의 학자금 대출 이용률(15.0%)이 국·공립대학(10.5%)보다 높은 것도 특징이다.
- 등록금 수준과 저소득층 학생 비중(2020, 李森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이 비쌀수록(주로 명문 사립대학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싼 등록금이 저소득층 학생이 양질의 사립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4. 국·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위한 법안 제출의 기대와 전망

-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법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면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인재 독식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OECD 교육지표 2019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중 약 1/3에 해당하는 북유럽 국가(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와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국공립 대학이 무상교육이다. 이 법안은 향후 사립대학 중심의 한국 대학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재정 부담의 주체 및 비율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시행령에서는 재정 부담 비율이 법정화 되어야 할 것이나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参 考 文 献

- 高鐔(2019). 『日本教育法学』. ソウル: 博英Story.
- 高鐔(2014). 『日本教育改革論』. ソウル: 博英Story.
- 高鐔(2006), “日本の義務教育費国庫負担制改革と示唆点”. 教育法學研究 18(1)
- 教育部(2020), “2020 教育基本統計 主要内容”, 教育部 報道資料(2020.8.28.)
- 金聖基, 黃浚盛, 李德蘭(2014). “高校無償教育の私立学校適用の時法的争点研究”. 教育法學研究 26(3).
- 徐榮仁 外(2020), 教育財政 綜合診斷 및 對策, 經濟·人文社會硏究會 協同硏究.
- 李森浩(2019), “登録金水準と低所得層学生の割合: 国家奨学金資料を利用した分析”, 韓国經濟硏究 37(1).
- 河奉韻(2010). “学校給食無償性論争の争点と課題”. 教育政治學硏究 17(3).
- 河奉韻(2009), “地方自治団体の教育経費補助の戦略的確保方案”. 教育法學硏究 21(1).
- 申鉉直(2003). 『教育法과 教育基本權』. ソウル: 青年社.
- 趙哲勳(2019). 『学校と 教育法』 (第3版). ソウル: 教育科學社.
- 韓國 教育部(MOE) <http://www.moe.go.kr/>
- 韓國教育開發院(KEDI) <https://www.kedi.re.kr/>
- 憲法裁判所. <http://www.ccourt.go.kr/>
- 國家法令情報センター <http://www.law.go.kr/>